

의안번호	제 90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5년 4월 1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0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년 4월 1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주요현안 집중 대응을 위해 부지사의 사무분장이 변경되었음. 사무분장에 따라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장을 정비하고, 협의회를 비상설화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협의회 구성(안 제2조)
 -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장을 “행정부지사”에서 “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변경
 -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비상설화를 위한 조항 신설
- 위원의 임기 삭제(안 제4조)
- 회의운영 방식 변경(안 제6조)

3. 의안전문 : 불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5. 관계법령 발채 : 불임

6. 비용추계서 : 불임

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,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6조 중 “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”를 “발생시 협의회를 개최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(생 략) ② 위원장은 <u>행정부지사가 되고</u>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.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건강생활실천 업무를</u> <u>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</u> <u>이 있을 때 구성하고, 안건에 대한</u> <u>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</u> <u>산한다.</u> <u><삭 제></u>
제4조(임기) ① <u>당연직 위원의 임기</u> <u>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</u> <u>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</u> <u>있다.</u> ② <u>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</u> <u>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	
제6조(회의운영) 회의는 제3조의 협 의사항이 <u>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</u> <u>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</u> <u>장이 소집한다.</u>	제6조(회의운영) ----- ----- <u>발생시 협의회를 개최한</u> <u>다.</u>

관련법령 발췌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7조(광고의 금지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민건강의 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
2.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,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건강생활실천협의회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,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·첨부하여야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사 유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주요현안 집중 대응을 위해 부지사의 사무분장이 변경되어 사무분장에 따라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는 것과
- 행정업무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비상설화하는 것으로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.

○ 작성자

-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한 찬 오